

춘천지방법원 2024. 11. 15 선고 2024가단1371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10. 18.

판 결 선 고 2024. 11. 15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양구등기소 2016. 10. 11. 접수 제520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2018. 10. 10.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

판사 유승원

별지